

	<h2 style="margin: 0;">학생창업지원 규정</h2>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2. 6.
		최종개정일자	2018. 1. 31.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학습을 토대로 한 창업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범위는 대학의 모든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
2. "학생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및 당해연도 졸업생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4.6.>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학생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학생창업 지원) ① 학생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이나 우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을 갖춘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 시킨다.

- ②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재학생들의 벤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졸업 후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학 생활 중에 사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휴학생 및 당해연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의한 학생 창업에 적용한다.

제6조(주관부서) 창업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취업처에서 주관하되, 인사 관련 사항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31.>

제7조(학생창업 휴학)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② 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 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 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대학은 학생창업휴학의 전제 요건으로 기술창업 교육과정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창업휴학의 승인) ①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기한을 두지 않으며, 창업사업의 해지 시 차년도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대학창업 지원) 대학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생 창업자(재학생, 휴학생, 당해연도 졸업생 포함)에게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 재정적, 물적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4.6.><개정 2018.1.31.>

제11조(창업신청서의 제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1. 창업(사업) 계획서
2.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 요약서
3.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서
4. 창업 아이템 개발 일정표
5. 지도교수 지도 계획서
6. 기타 창업관련 서류

제12조(선정기준) 학생창업자의 선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대학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4. 기타 사항

제13조(창업지원 기간) ①학생창업자로 선정 후 1년간 시설, 기자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4.6.>

②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지원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창업기업의 의무 등) ①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고, 창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창업자는 재학 및 휴학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자료제출 의무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주관부서의 동의 하에 약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학생창업자는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졸업 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5조(학생창업의 사후 관리) ①학생 창업자가 수행한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활동

이 저조한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②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대외 홍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제16조(학생창업기업의 기술실시계약체결) ①학생이 대학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용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 계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지분배분) 창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 출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통계의 관리 등) ①대학의 주관부서는 학생 창업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 규정과의 관계) ①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